

의안번호	2212215
의 퇴 인	전종덕의원
회 답 일	2025.11.10.
추계번호	25C444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1조 (요양급여)	-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함(제1항) 6. 간호·간병	의무규정
2	안 제49조의2 (상병수당)	- 공단은 15세 이상인 가입자 중 질병, 부상에 따른 소득의 손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동일한 부상이나 질병 당 최대 12개월의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제1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상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유급 상병휴가 기간 종료 직후부터 상병수당을 지급함. 이 경우 상병수당 지급 기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유급 상병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함(제2항) -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상병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소득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제3항) - 직장가입자의 상병수당은 소득 손실 발생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으로 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의 100분의 60으로 함(제4항) - 지역가입자의 상병수당은 소득 손실 발생일 기준으로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월액의 100분의 60으로 함(제5항) -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상병수당 일액으로 함(제6항) - 상병수당의 일액은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을 넘지 못한다.(제7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1조 (요양급여)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9조의2 (상병수당)	

2. 상세 사유

□ 요양급여(안 제41조)

- 개정안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 본 개정안은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 총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님¹⁾. 다만, 건강보험 추가지출만큼 건강보험료 수입액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²⁾,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추가지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로 볼 수 있음³⁾⁴⁾

1)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비용추계’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재정 자체는 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국고지원 금액만 그 대상이 됨

2) 건강보험료율 결정 절차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 지출 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를 추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지출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간병의 범위, 간병 단가 및 간병을 처방받게 될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개정안은 보험급여 범위·방법·절차에 대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간병 급여화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급여 대상자와 단가(요양급여비용), 급여 형태 등이 정해져야 하나, 이를 임의로 가정하기 어려움
 - 현행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⁵⁾
 - 참고로,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라 2015년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참여 의료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시범사업)가 진행되고 있으나,⁶⁾ 대상자가 증가에 따라서는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시설 기준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수 있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0년 163만명에서 2024년 265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환자 중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간병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한시)”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예산 61억원을 배정하였음

[표 1] 연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 수

(단위: 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이용환자 수	1,625,488	1,944,493	2,041,684	2,466,537	2,646,663

자료: 보건복지부

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단,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 4) 2022~2024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평균 14%를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였음
- 5)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함)보다 많을 때는 구입금액을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함
- 6)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대상 병원 확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표 2]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개요

구분	개요			
사업기간	▣ 2024년 4월 ~ 2025년 12월			
사업규모	▣ 국비 61억원			
지원대상자	▣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 모두 높은 환자 - 의료최고도·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 수준 환자 -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를 통해 선정			
지원기간	▣ 의료고도 환자: 180일 ▣ 의료최고도 환자: 최대 300일			
세부내용	구분	A형	B형	C형
	지원 간병인 수	17명	20명	25명
	환자당 일일 본인부담금	9,756원	11,478원	17,935원
	(본인부담률)	(40%)	(40%)	(50%)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4.04.01.)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상병수당(안 제49조의2)

- 개정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병수당을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개정안은 질병, 부상에 따라 소득의 손실이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하려는 내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 총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상병수당의 수급 대상 수급 기간,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는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여 추계가 곤란함
 -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소득 손실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 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의 60%를 상병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그 외의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 상한, 지급 기간 등은 정하고 있지 않음
 - 한편,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법 제50조⁷⁾에 따라 2022년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3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시범사업은 요양방법 제한 여부에 따라 “근로활동불가모형”⁸⁾과 “혼합 근로활동불가모형”⁹⁾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대기기간의 길이, 최대 보장기간 등의 조합에

7)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따라 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

8) 요양 방법과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모형

9) 입원 및 재택·외래 이용 시 각 기간에 대해 별도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모형

따라 다양한 모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예산 36억 1,400만원이 배정되었음¹⁰⁾

- 현행 시범사업이 보장기간을 최대 150일로 설정한 반면에, 개정안은 최대 12개월의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시범사업 대비 재정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됨

[표 3]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계획(안)

구분	2단계		3단계 (‘24.7~)
	’23.7~	’24.10~	
지역	안양, 대구 달서	용인, 익산	충주, 홍성, 전주, 원주
소득기준	소득 하위 50%(선별형)		
유형	근로활동 불가	혼합 근로활동불가	근로활동 불가
대기기간	7일	7일(재탁, 외래), 없음(4일 이상 입원)	7일
보장기간	150일	150일	150일

자료: 보건복지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10) 정부는 앞서 2025년 상병수당 본사업 도입을 발표하였으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년 2월)에서 이 시기를 2027년으로 연기하였음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